

책문과 대책(1696 이후)

1. 사료 발굴경위와 저자 소개

숙종이 1693년에 일어난 '울릉도 쟁계(인용복 사진)'를 과거시험에 출제하여 대책對策을 구한 적이 있었음을 밝혀주는 문서가 발굴되었다. 경상북도 의성지역 선비였던 신탁함申德函(1656~1730)의 문집 안에 실려 있는 대책이 그것이다. 이 글은 숙종 연간 최대의 외교 현안이었던 '울릉도 쟁계'를 가지고 출제된 시험 문제와 그에 대한 답안지이다. 문제 1면 반, 답안 11면 남짓, 모두 13면으로 된 필사본형태의 이 대책은 숙종이 '울릉도 쟁계'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조정대신들의 의견을 제시해준 뒤 이에 대한 응시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책문策問'과 '대책對策'이라는 전형적인 책문策文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과거시험에 출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서는 2011년 8월 중순 경상북도 대구지방번호사 회 북도분과위원회 소속의 방문일 변호사가 (사단법인)국학연구소에서 독도 관련 문서를 발굴하다가 입수한 것인데, 위원장인 최봉태 변호사가 필자에게 검토를 의뢰함으로써 그 내용이 밝혀졌다.

이 글을 지은 신탁함(李德函)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증유仲游, 호는 농음鸞

1) 신탁함이 지은 만사가 《향재집恒齋集》(李德函, 1631~1698)에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麟年堂承之地本不到故解者雖有期卷
 跡年非人之所可通也小間亦假借錄存
 或謂樹木是冬極繁觀則和舍祭今猶歲
 本極木雖不棄猶極楓樹極松極品極年
 冬松柏極著多若松柏木其來極極本故
 終無一林如朝則為鳴志極品也此外無
 屬其年西既無一尺亦本保身也其是為
 亦甚可怪其齊秋則為可又豈而深還石堆
 或丁或成對穴不知始於何家是時有
 去觀之談及慶在體小品是齊齊也
 此板木片深者看處有之而或
 或者木釘或有傷者而東南春

此而兵衛即謂者言人之所以害利也無
 性身也其下保之而為其利極定亦有若
 存於子祖屋事是科且其影或成或
 樹榮然極難連之而單其有月初
 堂似風波發經到西地而勢極其
 宮也如月來風誠不可多謂其子仍為
 六排發在位有別舉大相年是五其
 不其其其其在先也保其其後日其
 同是身去其風也初其其其其其其
 遠其其其其在先也保其其後日其
 初其其其其在先也保其其後日其
 風情極高則則明之日為形極其

此而兵衛即謂者言人之所以害利也無
 性身也其下保之而為其利極定亦有若
 存於子祖屋事是科且其影或成或
 樹榮然極難連之而單其有月初
 堂似風波發經到西地而勢極其
 宮也如月來風誠不可多謂其子仍為
 六排發在位有別舉大相年是五其
 不其其其其在先也保其其後日其
 同是身去其風也初其其其其其其
 遠其其其其在先也保其其後日其
 初其其其其在先也保其其後日其
 風情極高則則明之日為形極其

最多交竹中東南風極大
 祭及年于條石是年且而西竹
 雲在無慮教于子或或有除林在或有
 是齊自東南而流亦中而竹有玉
 雖此亦竹雖本之遠是齊大極保
 而亦有餘缺廣則而吹湖流水
 而亦有餘缺廣則而吹湖流水
 而亦有餘缺廣則而吹湖流水
 而亦有餘缺廣則而吹湖流水
 而亦有餘缺廣則而吹湖流水
 而亦有餘缺廣則而吹湖流水
 而亦有餘缺廣則而吹湖流水
 而亦有餘缺廣則而吹湖流水
 而亦有餘缺廣則而吹湖流水

爾遠過七百里及如字今為近用也
 可謂遠則比蘇州猶有一條之遠是時
 及林散是事亦能保其風之頭遠是
 遠則又子以將各各是齊年大風高
 故過五百人皆保其命者亦亦亦亦
 于者以遠解者之也而亦亦亦亦亦
 安腹散有心者之也而亦亦亦亦亦
 于者以遠解者之也而亦亦亦亦亦
 復命有能也其其其其其其其其
 為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
 大許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
 為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

爾遠過七百里及如字今為近用也
 可謂遠則比蘇州猶有一條之遠是時
 及林散是事亦能保其風之頭遠是
 遠則又子以將各各是齊年大風高
 故過五百人皆保其命者亦亦亦亦
 于者以遠解者之也而亦亦亦亦亦
 安腹散有心者之也而亦亦亦亦亦
 于者以遠解者之也而亦亦亦亦亦
 復命有能也其其其其其其其其
 為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
 大許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
 為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其

瘡, 아버지 신희석과 어머니 풍산 홍씨 사이의 장남으로 경상도 의성현 수장리에서 태어났다. 1730년 75세의 나이로 졸했으며, 본관은 아주鰲洲(거제현-역자 주)이다.²⁾ 28세인 1684년에 생원시와 진사시 양시에 합격했으나 문과에 실패하여 관직에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의 가계家系의 인물 가운데 효자가 많아 읍지(경상도 읍지)에 많이 등장했으며, 의성 지방에서는 명적으로 알려져 있다. 저술로는 《우열녀전馬烈女傳》이 있고, 《처변권형處變權衡》(1695, 필사본, 4권 2책)³⁾이 성균관 존경각에 소장되어 있다.

2. 문서의 형식과 시대적 배경

이 문서는 '임금은 말하노라[王若曰]'(策問)로 시작하고 있고, '신은 답합니다[臣對]'(對策)로 끝맺고 있다.

책문策問은 아래와 같다.

임금은 말하노라.

울릉도가 아득히 동해東海에 있는데 《여지승람》에는 강원도에 속해 있다. 우리나라 땅이라고는 하나 수로가 멀고 험해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지 않았었다. 조종 조에는 (살고 있던-역자 주) 섬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 그 땅을

신탁함은 이승일, 이휘일, 이현일 집인과 교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아주 申氏世系>, <불망기>(필사본, 연대미상)(박주, <17세기 후반 경상도 의성현의 우씨 열녀의 삶과 생활>, <史學研究> 제83호(2006. 9), 163쪽에서 재인용).

3) 이 저술에는 自序와 跋, 기타 君臣內篇, 君臣外篇, 父子內篇, 父子外篇, 夫婦內篇, 夫婦外篇, 兄弟內篇, 兄弟外篇, 師友內篇, 師友外篇, 變禮 등이 실려 있다.

비워두게 했다. 근래 일본인이 대나무와 잔북 등의 이익을 탐해 '竹島'라 가 칭하고 그 땅에 우리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가 이제濫探하는 것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나라가-역자 주) 근시近侍를 자주 파견하여 죽을 竹鬻의 허실과 경계에 구분 있음을 효유曉諭했으나 끝내 따를 생각이 없어 서 (양국 사이에-역자 주) 자못 불화의 단서가 있게 되었다.

내가 이를 염려하여 널리 조정(대신들-역자 주)의 생각을 물으니, 혹자는 말하기를, "조종의 강토는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인데,⁵⁾ 한번 그들의 소유가 되면 동쪽 경계를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역자 주) 비람을 기다렸다가 출몰할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변수邊帥를 뽑아 보내 우리 쪽에서 먼저 거수據守하는 것이 낫습니다"고 했고, 혹자는 말하기를, "바다 밖 조그만 섬은 본래 빈 땅이니 (일본과의-역자 주) 백년 동안의 인호隣好⁶⁾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이웃나라와 틈이 벌어지는 것은 좋은 대책이 아니니, 그들이 왕래하도록 내버려두고 (우리 군사들에게는-역자 주) 변방 방비를 잘하도록 수직修繕하는 것이 낫습니다"고 했다.

이 두 가지 설 가운데 어느 것이 나은가? 아니면 이 밖에 따로 만진萬全의 양책良策이 있는가? 자대부子大夫들은 글 읽고 도를 이야기하는 여기에 반드시 '변방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평안히 할 방책'을 강구하여 각자 편에 짓도록 하라. (騰)⁷⁾

4) 竹島와 울릉도를 말한다. 원문인 경우는 竹島로 표기하고, 현대문에서는 '다케시마'로 표기한다.

5) <속중실록> 1694년 2월 23일자 기사에는 남구만의 말로 나온다.

6) <속중실록> 1695년 6월 20일자 기사에 따르면, 남구만이 일본의 개각 세계를 거절하자 치왜 다치바나가 한 말로 나온다.

7) '책문' 뒤에 '등림'이라고 적혀 있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기출문제를 신탁함이 배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신탁함이 예상한 문제를 적은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시에 실제로 전시가 있었고 시험문제가 매우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출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신탁함의 대책對策은 아래 문장으로 시작한다.

신은 답합니다.

신은 듣건대, 보국保國의 도는 심세審勢에 있고, 집사集事의 기틀은 득인得
人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형세를 잘 살핀다면 보존하지 못할 나라가 없고,
적임자를 얻는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후략)

신탁함은 '보국의 도'와 '집사의 기틀'로 대책을 시작하고, 해결방안은
'심세 득인審勢得人'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이런
문제가 과거시험에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언급했다. 왕이 이 문제로 깊
이 근심하고 필사拂士들에게 널리 자문을 구했으나 아직도 빠뜨리거나 실
의失直한 점이 있을까 염려하여 이 문제를 시험에까지 내게 되었다는 것
이다. 이는 숙종이 조정대신들의 대책이 미진하다고 여겨서이다. 문장 안
에 "(왕이) 친히 대정大庭에 임하여 많은 선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내어
만전의 계책을 듣고 싶어했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왕이 직접 전시殿試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전시란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행하던
과거의 마지막 시험으로, 여기서 그 결과에 따라 급제자의 등급이 정해졌
다. 보통 식년시로 3년에 한 번 치르게 되어 있으나 증광전시와 같이 나
라에 경사가 있을 때는 특별히 시행되기도 했다.

이 글로만 보면 시험이 언제 출제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숙
종 연간의 전시 기록을 보면 대략 추정할 수 있다. 실록에서 '올름도 정
계'를 전후한 시기에 등장하는 전시를 보면 모두 3건이 나온다. 숙종 21
년(1695) 9월 19일 별시別試 전시로 11인을 뽑았고, 숙종 22년(1696)
11월 21일 식년 전시에서 35인을 뽑은 적이 있으며, 숙종 25년 즉 1699

년 4월 22일 문과 식년 전시에서 40인을 뽑은 사실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책ตอนที่ 나온 시기는 1695년, 1696년, 1699년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책문에서 조종의 강도를 남에게 줄 수 없다고 한 말이 인용된 점,
백년 동안의 인호隣好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점, 그리고 실제로 조
정에서 이 문제로 숙종과 대신 사이의 회동이 잦았던 시기가 1695년 10월
경이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1695년 9월의 전시였을 가능성은 낮다.
책문에 임금이 근시近侍를 자주 파견했다고 했고, 1696년 10월 13일자 사
료 기사⁸⁾가 언급된 점으로 보면, 1696년과 1699년 전시에서도 1696년 11
월 전시일 가능성이 높지만 확실한 것은 알기 어렵다.⁹⁾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과거시험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책
문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자. 1693년 봄에 울산과 등래 어부
약 40여 명이 올름도에서 어로작업을 하다 일본 어부와 만나 충돌이 빚
어졌다. 이때 일본 어부들은 안용복과 박어둔 두 사람을 일본으로 납치해
갔고 오나고의 관리는 이들을 조사했다. 돛토리 성하城下를 거쳐 나가사
키항행소로 보내진 이들은 에도막부의 지시로 쓰시마를 통해 송환했다.
쓰시마번은 이들을 40여 일 감금했다가 11월 초에 부산으로 보내면서 조
선 어민의 올름도 출어를 금지하는 시계를 함께 보냈다. 이로부터 양국
사이에는 올름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규가 일어났다.

1693년 11월 일본이 조선인의 올름도 출어금지를 요청하는 시계를 함

8) 《숙종실록》과 《송정원일기》에 '쓰시마가 올름도를 추도竹島라 거짓 칭하고, 에도의 평
이라 핑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름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는' 내용이
실려 있다.

9) 다만 1699년 4월의 전시일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이때는 일본의 도해금지령이 조선
에 공식적으로 전해진 뒤이고, 《숙종실록》 1697년 4월 13일자 기사에도 유상운이
'올름도에 대한 일은 이미 명백하게 한 곳으로 귀속되었다'고 하고 있어 더 이상 이
문제를 전시에 낼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서를 전달했지만, 다치바나는 이에 불만을 품고 서신을 보내 육실을 펴부
었다.¹²⁾ 이를 두고 조선 조정에서는 제2의 임진왜란이 다시 일어날까 염
려할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안용복 일행이 1차 피랍에서 돌아온 뒤 비변사의 취조를 받은 시기는
1695년 9월이고, 쓰시마번의 설정 빈주 소 요시자네(義真)가 에도로 가서
노중 아베 분고노카미(阿部後守)에게 ‘안용복 사건’을 보고한 시기는 1695
년 10월경이다. 그리고 에도 막부가 돗토리번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
에 관한 조사를 지시한 시기는 1695년 12월 하순이었다. 이때 막부의 문
의에 대해 돗토리번은 “다케시마는 이나바와 호키에 속하지 않으며, 다케
시마와 마쓰시마 그 외에 두 지역(이나바와 호키)에 부속된 섬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이것이 1696년 1월, 이른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
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다케시마도해금지령을 내기에 앞서 노중
아베 분고노카미는 쓰시마번 가로 히라타 나오에몬(平田右衛門)을 불러 다
케시마(울릉도)에 일본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다케시마도해금지령은 1696년 1월 28일 쓰시마번에 전해졌지만 조선
에는 그해 10월에 쓰시마에 도해한 역관에게 구상서로 전달했을 뿐 정식
서한을 보낸 것은 아니었다. 도해했던 역관이 조선으로 귀국하게 되는 것
은 1697년 1월이다. 그러나 이후로도 일본의 도해금지령에 대한 조선 서
장의 문언을 문제삼아 일본이 개정을 요구하다 막부의 답신을 조선 측에
전달함으로써 정식으로 외교적인 결착을 보게 되는 것은 1699년 3월에 이
르러서이다.

《속중실록》과 《승정원일기》, 《비변사등록》에는 속중이 ‘울릉도 쟁계’

11) 《속중실록》 21년(1695) 6월 20일(경술).

12) 《속중실록》 21년(1695) 6월 20일.

게 보내음으로써 시작된 양국의 분규는 1694년 1월 15일 권혜의 회답서계
사본이 쓰시마 정관 다치바나 마사시게(樞真重)에게 전해지면서 본격화되었
다. 다치바나는 권혜의 회답서계에 나온 문구의 수정을 요청하다가 2월
중순 쓰시마로 돌아갔으나 1694년 중반에 다시 오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694년 윤5월 부산왜관에 도착한 다치바나는 앞서 조
선 정부의 답서에 등장한 ‘귀계 죽도(貴界竹島, 폐경 울릉도(廢鏡之鬱陵島))’
부분의 삭제를 다시 요청해 왔고, 그 사이에 조선은 집권세력이 남인에서
소론¹⁰⁾으로 바뀌어 일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경책으로 대처하는 상황
이 전개되었다. 1694년 8월 점위관 유집일은 ‘일본인의 왕래를 금지한다’
고 고쳐 쓴, 예조참판 이여의 ‘개작 서계’를 지참하고 동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초기의 회답 서계(1693년 10월의 서계)를 회수하고 다시 개작한 서
계(1694년 9월)를 왜관에 전했다. 이때 동래에서 유집일은 안용복을 심문
하여 안용복이 나가사키에서 침책당한 사실과 쓰시마의 농간을 폭로한 정
상을 알아내어 일본 왜자를 나무라기도 했다. 남구만의 건의로 속중은 9
월에 무신 장한상을 파견하여 울릉도를 조사하게 했다.

다치바나 마사시게는 회답서계의 수정을 요구하며 왜관에 머물러 있다
가 쓰시마 번주의 병사와 그로 말미암은 쓰시마번의 상황 변화에 따른
귀국조치로 인해 1695년 6월 부득이 왜관을 떠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695년 5월 다치바나는 4개조의 힐문詰問을 동래부사 앞으로 보냈는데, 조
선 정부의 답서가 6월에 동래로 내려왔다. 다치바나는 조선의 답서를 두
고 돌아가면서, “양국의 화호和好는 답서를 화관和館에 남겨 두는 데 있었
습니다. 답서가 한 번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두 나라는 백년의 우호를 상
실할 듯합니다”¹¹⁾고 했다. 다치바나가 절영도에 이르렀을 무렵 조선의 답

10) 영의정에 남구만, 좌의정에 박세채, 우의정에 윤지원이 기용되었다.

로 말미암아 냉각된 대일對日 관계와 안용복의 처리를 둘러싸고 조정 대신들과 논의한 사실들이 1694년 2월부터 1696년 10월에 걸쳐 여러 건 실려 있다. 조선 조정에서 '울릉도 쟁계'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한 시기는 1695년 가을부터였고 일본의 분위기가 조선에 전해진 시기도 1695년 가을경이다. 책문과 대책 안에 안용복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숙종이 이 사건에 대해 속지하고 있었음은 책문의 행간을 통해 알 수 있다. 안용복 사건에 대한 이해 없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문제와 답안 내용

문제와 답안을 보면 당시 조선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우선, 시험문제(策問)를 통해 숙종의 '울릉도' 인식을 살펴보자.

숙종은 울릉도를 동해상에 있는, 강원도 소속의 우리 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로가 험하고 먼 까닭에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이른바 '쇄환책(刷還策)'을 취한 것이며 그 결과 섬이 비게된 것(遂虛其地)일 뿐이지 우리 땅이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숙종이 '쇄환'을 언급하고 '수토搜討'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제 시기는 1697년 수토제 건의가 이뤄지기 전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울릉도가 빈 사이를 틈타 섬의 자원을 탐내 울릉도에 '竹島'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 백성의 어채를 금해줄 것을 청했다. 이에 숙종은 '죽울竹鬱'의 허실과 쟁계에 구분 있음을 일본인에게 자주 효유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를 보면 당시 숙종이 울릉도를 竹島로 가칭하여 취하려던 쓰시마번의 농간을 간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사실들이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남아 있어 책문策問과도 부합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조정의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었다. 하나는 우리 쪽에서 변수邊帥를 보내 먼저 점거하여 지키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과의 우호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울릉도 왕래를 허용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변방의 방비를 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숙종은 두 가지 방안 가운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과거시험에 출제하여 사대부들의 의견을 구하게 된 것이다. 조정에서 일본의 울릉도 왕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으로 보건대, 일본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조선에 전달되기 전임을 알 수 있다.

신탁함은 책문에 제시된 두 가지 의견을 모두 비판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책문에 제시된 두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는 '거수據守'설이고, 다른 하나는 '변비邊備'설이라고 할 수 있다. 신탁함은 두 가지 방안 대신 이른바 '심세 득인審勢得人'의 방책을 자설로 내세웠다. 그가 개진한 '심세 득인'의 방책이란 '형세를 잘 살피고 사람을 제대로 얻는 것'을 말한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개진하기에 앞서 현 상황을 진단했다. 먼저, 그가 취한 입장은 조종조가 울릉도 쇄환정책을 편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어서 이지 우리 땅을 포기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는 백성들의 왕래가 끊어져도 울릉도에 초목과 물고기류가 풍부해서 일본이 물산과 땅을 넘보고 있다고 보았다. 신탁함은 일본이 울릉도를 '竹島'라 가칭하며 조선인의 어채 금지를 요청하여 우리를 시험해 보려는 계획은 그 정상이 매우 교활하고 방자하다고 보았다. 이런 사람들에게 덕으로 대하고 사신을 보내 허실을 분변해도 결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들의 탐욕 또한 끝이

없어 양국 사이의 갈등이 그치지 않으리라고 보았다. 상황이 이렇진대 조정 대신들이 제시한 두 가지 방책은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신덕함의 입장이었다.

신덕함에 따르면 첫 번째 대책인 “변수를 보내 점거하여 지키자는” 방안은 울릉도가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쓸모없는 섬인데다 군사들이 수로에 익숙하지 않아 가다가 표류하거나 역병에 걸려 죽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패하기 쉽다고 하였다. 두 번째 대책, 즉 “그들의 왕래를 허용하고 우리가 변방 방비를 잘하자는” 방안은 국가간 성약成約을 잘 지키지 않고 끝없이 남의 땅을 넘보는 탐욕스런 일본에게는 통하지 않을 방책이라는 것이었다. 오히려 이 방책을 쓴다면 일본은 기탄하는 바가 없어서 작게는 공갈하여 요구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고, 크게는 분에 넘치게 바랄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신덕함의 대일관은 기본적으로 불신과 교활한 대상이라는 인식 위에 있었고, 이 때문에 그는 조정 신하들이 제시한 두 가지 방책이 모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가 보기에 일본의 울릉도 점거 책략에 맞설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형세를 잘 살피고(審勢) 적임자를 얻어 처리하는(得人) 방법”뿐이었다. 이에 그는 ‘심세’ ‘득인’의 요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연했다.

신덕함은 ‘형세를 잘 살피는 방법’에는 세 가지 요체가 있다고 했다. 바로 지세地勢, 시세時勢, 병세兵勢를 살피는 것이다. 바닷길이 험한 지역에 보낼 때는 뱃길과 노 젓는 일에 익숙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지세를 잘 살피는 것이며, 기근이 거듭되어 백성이 죽어갈 때는 땅을 개척하는 데 백성을 부리지 않는 것이 시세를 잘 살피는 것이며, 병력이 약할 때는 군사

에 익숙하지 않은 백성을 오랑캐와 겨루게 하지 않는 것이 병세를 잘 살피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적임자를 얻어 처리하는 방법’에도 세 가지 요체가 있는데, 바로 상신相臣, 수신帥臣, 사신使臣을 얻는 것이다. 오랑캐가 조정을 가버려 여기지 않도록 재상의 임무를 제대르 하는 것이 올바른 상신이며, 국경의 범위가 줄지 않도록 장수가 제대로 대적하는 것이 올바른 수신帥臣의 역할이며, 일본의 요구를 잘 물리치는 것이 올바른 사신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신덕함은 ‘안변의 대책’은 ‘심세 득인’보다 시급한 것이 없다고 했다. 이 심세 득인의 여섯 조목만 잘 실행된다면 일본이 울릉도를 노릴 이치가 없는, 이른바 ‘만전의 양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신덕함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외양外攘’을 위한 대책이고, ‘외양’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내수’라고 하며, “안을 닦는 것은 본적이고 밖을 물리치는 것은 말 못인지라” “내수가 다한 뒤에 외우外禦는 자연히 소멸되는” 것이니, 임금은 내수에 힘써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거한다면, 울릉도를 두고 일본과 다투는 문제는 “탄환만한 조그만 땅을 다투는” 형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된다. 신덕함의 방책 역시 당시의 시대적 한계 즉 유향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가 ‘거수’설을 지지하고 좀 더 발전시켰더라면 울릉도 ‘개척’설로 이어졌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울릉도를 먼저 차지하여 지키자는 논의에 대해, “자갈밭 같아 쓸모가 없는 섬을 어찌 육지처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했다. “땅을 넓히려 힘쓰는 자는 흥폐해지고, 틈을 넓히려 애쓰는 자는 강疆해진다고 했으니, 아! 전하게서는 힘쓰십시오”라는 진언으로 마무리된 그의 답안은 이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4. 사료의 역사적 의미

신탁함은 대과大科에 급제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의 답안에 “친히 대정大庭에 임하시어 우리 선비들에게 책문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내어 만천萬의 방책을 듣고자 하십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시험이 전책殿策¹³⁾형식이었음을 의미한다. 신탁함은 대정에 나아가간 적이 없으므로 전시에 임할 경우를 가정하여 작성한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대책을 베낀 것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만에 하나 답안 작성자가 신탁함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책이 당시 ‘올릉도 쟁계’에 대한 사대부의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다. 동 시대 다른 응시자(또는 급제자)의 답안지가 현재 알려져 있는 것이 없으므로 위의 대책을 다른 대책과 비교해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탁함의 대책이라고 가정하고 이 사료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올릉도 쟁계’가 과거시험에 출제되었다는 사실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답안 내용이 지니는 의미이다.

우선 첫 번째 의미와 관련해서는, 이 책문은 ‘올릉도 쟁계’가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 준다. 보통 과거시험의 책문은 국가경영의 방도로 개혁의 방책 내지 현안문제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이 범주에는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의 모든 분야가 망라되었고 응시자의 대책 역시 국왕에게 절실한 답변을 제공하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대체로 유학적 사고에 의거한 원칙론을 개진한 것이 많았다. 그런 가운데 속증 연간의 전시殿試에는 ‘올릉도 쟁계’라는 구체적 사안을 다룬 것이 시제로 나온 것이다. 이는 당시 속증을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일본

13) 임금이 직접 책문策問하고 사대부가 대책對策하는 형식의 과거형태를 말한다.

의 올릉도 침탈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에 국왕을 비롯한 통치층이 적극 대응하려 했음을 보여 준다.

두 번째 의미와 관련해서는, 신탁함(답안 작성자)이 올릉도로 말미암아 빚어진 외교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 비해, 제시한 답안은 그다지 현실적인 방책이 못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런 원칙론은 결국 올릉도 개척 논의로 이어지기 어려웠다. 일본은 ‘올릉도 쟁계’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케시마(올릉도)뿐만 아니라 마쓰시마 즉 독도에 대해서도 인지하게 되었고 언제나 이를 한 세트로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두 섬이 모두 일본 이나바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어 ‘도해금지령’을 냈다. 이에 견준다면 우리나라는 동해의 올릉도 범주에 ‘독도’를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그 존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후에 독도문제의 빌미를 남겼다.

그럼에도 이 문서가 지닌 사료적 가치와 의미는 크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관찬서에 보였던 ‘올릉도 쟁계’ 관련 기술이 책문 형태로 남아 있음이 알려짐으로써 ‘올릉도 쟁계’의 공적인 성격이 다시 한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당시 올릉도를 둘러싼 분규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올릉도 쟁계’와 관련해 관찬서 외에 개인 저술로 알려진 것으로는 1977년에 알려진 장한상(1656~1724)의 〈올릉도 사적〉과 2001년에 알려진 박세당(1629~1703)의 필사본 〈올릉도〉가 있었다. 장한상은 ‘올릉도 쟁계’가 발단이 되어 1694년 가을에 어명으로 올릉도를 수도한 장본인이며, 박세당은 이 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영종추부사 남구만이 그의 처남이라는 점에서 모두 이 사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장한상의 글은 경상

우리 쪽에서 먼저 거수據守하는 것이 낫습니다"고 했고, 후자는 말하기를, "바다 밖 조그만 섬은 본래 빈 땅이니 (일본과의-역자 주) 백년 동안의 우호(友好)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웃나라와 틈이 벌어지는 것은 좋은 계획이 아니니, 그들이 왕래하도록 내버려두고 (우리 군사들에게-역자 주) 변방 방비를 잘하도록 수칙(修勅)하는 것이 낫습니다"고 했다.

이 두 가지 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이외에 따로 만천의 양책(良策)이 있는가? 자대부(大夫)들은 글 읽고 도를 이야기하는 여가에 반드시 '변방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평안히 할 방책'을 강구하여 각자 편찬에 짓도록 하라.

신은 답합니다.

신은 듣건대, 보국(保國)의 도는 심세(審勢)에 있고, 집사(集事)의 기틀은 득인(得人)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형세를 잘 살핀다면 보존하지 못할 나라가 없고, 적임자를 잘 얻는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漢) 원제(元帝)가 주에(珠崖)를 포기한 일(16)이 영토가 줄어들고 위엄이 손상된 데 가까우나 중국이 근심이 없을 수 있었던 것은 형세를 잘 살피며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제(齊) 위왕(威王)이 동용한 진반(田盼)은(17) 변방을 지키는 하나의

15) 숙종 21년 을해(1695) 6월 20일(경술).

'치(治)에 골간(骨幹)이 제(齊)의 회담을 요구하니 남구만이 거절하다'에 백년 동안의 우호를 일본이 말한다.

16) 옛날 한(漢)나라 무제(武帝)가 남월(南越)을 쳐서 멸망시키고 주에(珠崖)를 설치했는데, 한번 전수(轉輸)하는 사이에 죽은 자가 수만 명이 되니, 원제(元帝) 때에 이르러 가연(賁)이 옳지 못한 일이라고 극언(極言)하여 조칙(詔勅)을 내려 파했다.

17) 《史記》, 威王 七年; 《資治通鑑》 周紀 28년.

북도 의성에서 발견되었는데, 책문 역시 의성에서 발견되었다. 17세기 사료가 경상도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기록을 남기는 자들이 관리였던 사실에 비추보면 수긍이 간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기를 기대해 본다.

5. <책문> 번역문

임금은 말하노라.

울릉도가 동해(東海) 가운데 있는데 《여지승람(輿地勝覽)》에는 강원도에 속해 있다. 비록 우리나라 땅이라고는 해도 수로가 멀고 험해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지 않았다. 조종조에 (살고 있던-역자 주) 섬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와(歸還) 그 땅을 비워두게 했다. 근래 일본인이 대나무와 전복 등의 이익을 탐하여 '竹島'라 가칭하고 그 땅에 우리 백성들이 경계를 넘어가 어채(漁採)하는 것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우리나라가-역자 주) 근시(近侍)를 자주 파견하여 죽을(竹鬱)의 허실(14)과 경계에 구분 있음을 효유(曉諭)했으나 끝내 따를 생각이 없어 (양국 사이에-역자 주) 자못 불화의 단서가 있게 되었다.

내가 이를 염려하여 널리 조정(대신들-역자 주)의 생각을 물으니, 후자는 말하기를, "조종의 강토는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인데, 한번 그들의 소유가 되면 동쪽 경계를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역자 주) 바람을 기다렸다가 출몰할지 진위를 예측하기 어려우니, 변수(邊帥)를 뽑아 보내

14) 일본이 竹島라 호칭한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울릉도임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를 몰랐습니다.

신이 삼가 생각하건대, 해내海內에 나라를 세울 때는 들판을 그어 경계를 구분하는데, 저 울릉도(울릉도)에 대해서도 서책에 실려 있습니다. 땅은 관동에 속해 있고 길은 일본으로 통해 있으며 큰 바다가 하늘에 닿아 있으나 인가가 이어지지 않았기에, 멀리 조종조 때부터 이역異域처럼 여겨 그곳 백성을 육지로 옮기고 그 지역을 도외시한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는 바가 있어서였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취사取捨에는 전후의 다름이 있고, 득실의 요체는 처치處置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실로 형세를 잘 살펴 처치하고 적임자를 얻어 맡기되, 경중과 이해를 권도에 맞게 주관하며 진복鎭服과 제어를 각각 시의에 맞게 한다면, 끝내 일을 그르칠 근심이 없어 보국保國의 도를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신이 상상께서 내리신 책문을 읽어 보니, “근래 일본인이……만전의 양책良策이 있는가?”라고 하셨는데, 신이 두 번 세 번 거듭 읽어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신이 외판 바다에 있어 물산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초목이 자라고 있고 어별魚鱗이 자라고 있습니다. 울릉도의 나무는 큰 대나무요, 물고기는 큰 전복인진라, 저 왜인들이 이익을 탐해 우리 물산까지 침 흘리고 우리 토지까지 넘보아, 저 竹島라는 이름을 가칭하여 우리 울릉의 실상을 현혹시켜, 시험해볼 계책을 몰래 드러내 어채魚探하는 백성을 금해줄 것을 요청하니, 그 마음이 교활하고 그 말이 방자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먼 곳 사람을 편히 해주는 턱으로 선왕이 오랑캐를 대하던 도를 행하시어 시

관리에 불과했으나 조禮나라 사람들이 감히 동쪽으로 가서 고기잡이하지 못하게 된 것은 책임자를 얻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난 일의 분명한 증거로서 후왕들이 본받을 만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동극東部(울릉도)을 깊이 염려하시고 조정에서 근심이 깊어, 성심聖心에 꺾히신 지가 오래되었고 선비들에게 물은 신 것은 넓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실제로 빠트린 계책이 있을까, 일에 혹 마땅함을 잃었을까 염려하시어, 친히 대정大庭에 임하시어 우리 선비들에게 책문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내어 만전의 방책을 들고자 하십니다.

신이 주상의 뜻을 받들고 생각해 보니, 이 모책謀策은 신이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비록 그러하나 오이五餌로 적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가의賈誼의 술법은 쓰지 않으며,¹⁸⁾ 긴 밧줄로 적을 사로잡는 일은 종군將軍의 바람이 절실할 뿐입니다.¹⁹⁾ 그런데 다행히 전사前使가 진심을 말한 바에 격동된 바가 있으니 백면서생이 무엇을 꺼리겠습니까. ‘심세 득인奪勢得人의 설說’로 시종 고하고자 합니다.

신이 상상께서 내리신 책문策問을 읽어 보니, “울릉도가……그 땅을 비워두게 했다”고 하셨는데, 신은 두 번 세 번 거듭 읽어 보고는 어찌할 바

18) 가의賈誼의 오이저책五餌之策이란 진수성찬과 화려한 의복으로 미끼를 주어 흉노를 배반하고 한漢 나라에 돌아오게 하는 훌륭한 계책을 말한다(漢書) 卷48 (賈誼傳).

19) 왜적의 대장을 포박해 올 계책을 올려도 조정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漢나라 간의대부鞏大夫 종군將軍이 긴 밧줄(長纜) 하나만 주면 남월南越의 왕을 무어서 권하關下에 바치겠다고 말했다는 고사가 있다(漢書) 卷64下 (終軍傳).

비곡직을 따지지 않고 (그들에게-역자 주) 분명히 (보여 주고 밝게-역자 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근시近侍가 명을 받고 사신들이 잇달아 가서 그 허실을 분변했는데도 바로 결정하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계를 정하는 데 바다 밖으로 의거할 바 없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역자 주) 흑심을 고치지 않고 끝내 우리 명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끝없는 욕심은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스런 마음을 마구 부려 자못 불손한 태도가 있는 데다 불화를 만들어낼 단서도 많은지라, 변방이 소동하고 인심이 위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전하게서는 이를 근심하시어 조정 대신들에게 차례로 물어보셨으나, 주모周謀가 너무 많아 마치 한나라가 조정에서 왕박王朴²⁰의 기책奇策을 빌리기를 다투지만 두여회杜如晦같이 결단을 내려 주는 재상이 없는 것과 같으니, 전하게서 어느 것을 따라야 할지 몰라 신 등에게 물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같이 식견이 천박하고 평소 병법兵法에 어두운 자가 감히 입을 열어 편부便裘를 함부로 논한다면 이 또한 당세의 선비들에게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근심되는 시시時事를 헤아려 본 바는 있으니, 성상의 책문策問에 응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상께서-역자 주) 말씀하시기를, “조종의 강토는 남에게 줄 수 없으니, 번수邊帥를 가려 보내 우리 쪽에서 먼저 거수據守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정도를 지킨 바른[守經正] 논의라 하겠으나, 신은 그것이 쓸 수 없는

20) 오대오대 시대 후주後周 사람으로 총명하고 재주와 지혜가 많아 흡천력欽天曆과 악궐樂을 만들었으며 세종世宗을 도와 변경을 평정하고 추밀원 사樞密院使에 이른 인물이다.

방책임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자王者가 토지를 브베로 여기는 것은 토지때문에 인축人畜과 재곡財穀이 있게 되어 나라를 위해 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도는 그렇지 않아 비위두어 인축人畜이 없고, 버려두어 농사 짓지 못하니, 이는 바로 옛사람이 말한 ‘자갈밭 같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찌 유용한 옥지와 대등히 여겨 외이外夷와 전쟁을 하겠습니까. 지금 만약 번수를 들여보내 거수할 곳으로 삼는다면 우리 군사는 배 조종에 익숙하지 않고 수로에 어두워서 가다가 역병에 걸리거나 표류할 우려가 있고, (올롱도를-역자 주) 지키다가 의지할 곳 없이 외롭게 지낼 염려가 있습니다. 적은 오는데 구원해줄 만한 세력이 없고 사태는 금한데 돌아올 길이 없을 것이니, 진실로 이 계책을 쓰신다면 반드시 전하의 일을 그르칠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웃나라와의-역자 주) 백년 동안의 우호를 잃어서는 안 되니, 그들의 왕래를 내버려 두고 우리의 변방 방비를 잘히도록 수칙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형세를 살펴 권도에 맞게 한[審勢權宜] 논의라 하겠으나, 신은 그것이 진선盡善하지 못한 방책임을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자王者가 화친을 일삼는 것은 각 나라가 경계를 지켜 서로 침탈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인왜人は 그렇지 않아 성약成約을 염두에 드지 않고 연유 없이 땅을 요구하니, 이는 바로 옛사람이 말한 “땅은 한량이 있는데 진寨의 요구는 끝이 없다”²¹는 것이니 어찌하여 인호隣好를 잃을까는 염려하면서 그 침도侵侮는 가만히 앉아서 받을 수 있겠습

21) 전국 시대 조趙 나라 해문왕惠文王이 화씨씨和氏璧을 얻었는데, 진 소왕襄陽王이 조왕趙王에게 편지를 보내어 15성城과 비구기를 원했다. 그래서 인상여樞相如가 화씨벽을 가지고 진寨에 갔더니, 진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 하자 인상은 화씨벽을 되찾아 왔는데, 진 사정寨始를 때에 와서 결국 진寨의 옥새玉璽가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

니까. 지금 만약 왜인들의 왕래를 내버려 두고 우리는 퇴보退保하려 한다 면, 저들은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은 것을 기뻐하여 더욱더 꺼리는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작게는 공갈하여 취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고, 크게는 분에 넘치는 것을 바랄 염려가 있어, 이는 적을 교만하게 하고 상대를 두려워한다는 비난을 불러들여 유약함을 보여 자강의 방법을 잃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계책을 쓰신다면 대조대(조정)에 수치를 초래할까 두렵습니다.

아! 변방의 일을 처리하기 어려움이 이와 같은데, 조의朝議가 이처럼 통일되지 않으니 양단을 잡아 중도를 쓰는 일(執端用中)이 어느 계책이 낫겠습니까마는, 어리석은 신의 생각에 이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송나라 신하 소순蘇洵의 말에, “천하의 형세를 살피지 않고 천하의 일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선유先儒도 말하기를, “하늘이 일세의 재주를 낸 것은 일세의 일을 이루기에 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세에는 순역順逆이 있으니 그 기미를 잘 살피 행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일에는 난이가 있으니 그 재주에 맡겨 책임지게 한다면 어려움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신은 모르겠으나, 전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하여 변방을 안정시키는 근본으로 삼으셨는지요. 실로 형세를 잘 살피고 실로 사람을 제대로 얻었다면, 오늘날의 일이 필시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은 이에 대해 말할 것이 있습니다. 아, 형세를 살피는 도에는 그 요체가 세 가지가 있으니, 지세地勢, 시세時勢, 병세兵勢입니다. 적임자를 얻는 도에는 그 대체가 세 가지가 있으니 상신相臣, 수신帥臣, 사신使臣입니다.

신은 청컨대 이 여섯 조목을 들어 오늘날의 과실過失을 증명하겠습니다.

신이 삼가 병서兵書를 살펴보니, 지세를 익히지 않으면 적에게 사로잡힌다고 했으니, 이 말은 지세地勢를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해도海島가 험하고 멀어 뱃길이 막혔는데도 (뱃길에-역자 주)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갑자기 내몰아 예측하기 어려운 곳으로 보내려 했으니, 이를 일러 지세地勢를 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또한 《맹자》를 살펴보니, 호미가 있다 한들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고 했으니, 이 말은 시세時勢를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근이 거듭되어 노약자들이 죽어갔는데도 겨우 살아남아 있는 백성들을 데려다 쓸모없는 땅을 개척하려 했으니, 이를 일러 시세時勢를 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또한 손무孫武²²⁾를 살펴보니,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²³⁾라고 했으니, 이 말은 병세兵勢를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병력이 단약單弱하고 게을리진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훈련받지 못한 백성들을 써서 힘을 헤아릴 수 없는 오랑캐들과 겨루게 했으니, 이를 일러 병세兵勢를 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신이 말하는, “보국의 도는 심세審勢에 있는데 세勢를 살피지 못한다”는 것이니, 이와 같아서야 어떻게 그 나라를 보존하겠습니까.

신이 들긴데, 사마시馬²⁴⁾가 재상이 되자 북쪽오랑캐들이 “신중히 하고

22) 춘추 시대의 병법가 손무의 병서 《손자》를 가리킨다.

23) 《손자》의 〈모공편〉에 ‘백전백승’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24) 북송의 재상 사마광司馬光을 말한다.

일을 만들지 말자"는 경계를 했다고 하니, 상신相臣을 얻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묘당의 계획이 마땅함을 잃어 오랑캐가 조정을 가버려 여겼으니, 어찌 상신相臣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신은 듣건대, 중엄(仲淹)이 변수(邊)가 되자 서쪽오랑캐들이 놀라서 간담이 서늘해졌다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니, 수신使臣을 얻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매우 수척스럽게 국경이 줄어들었는데 적을 위압할 힘이 부족했으니, 어찌 수신使臣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신이 듣건대, 송나라 부필(富弼)이 거란에 사신 가서 대의(大義)로 할지(擲地)의 요구를 잘 물리쳤다고 하니, 사신使臣을 얻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사신들이 계속 이어졌는데도 저들의 요구가 그치지 않았으니, 어찌 사신을 얻었다고 하겠습니까. 이는 신이 말하는, '집사(集事)의 기틀은 득인(得人)에 달려 있는데 사람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니, 이와 같아서야 어떻게 그 일을 이루겠습니까.

아! 진하게서는 이 세 가지 형세에 대하여 이미 제대로 살피 대처하지 못하였고, 세 가지 임무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갓 조종조에 개척하지 않은 땅을 개척하고 조종조에 제압하지 못한 적을 제압하고자, 이러한 행위로 바라는 바를 구하신다면, 26) (이는-역자 주)

25) 송의 변중엄(仲淹)을 말한다.

26) 전국 시대 제 선왕(齊宣王)이 일찍이 전쟁을 벌여 토지를 넓히고 진초(秦楚)를 호령하려 는 야욕을 가진 데 대해,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이런 행위로써 이린 옥망을 구하신 다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以若斯爲 求若斯欲 猶緣木而求魚也)"라고 했다. 이것이 후에 아주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성취하려는 옥망을 비유하 는 말을 가리키게 되었다(孟子, <梁惠王上>).

무익할 뿐만 아니라 뒷날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구구하게 바다로 가서 섬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 형세를 살피는 것이 나으며, 급급 하게 변수에게 방비를 신칙하는 것보다는 먼저 제대로 된 책임자를 얻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변방을 안정시키는 대책'으로는 '심세득인(審勢得人)'보다 급한 것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진하게서는 왜인의 교활함을 근심하지 마시고, 그 형세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십시오. 그리고 변방의 섬을 보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근심하지 마시고, 그 책임자가 제대로 지세와 시세를 살피지 못할까를 염려하십시오. 또한 왜인의 교활함을 이겨낼 방법을 다해 재상과 장수를 얻되, 전대(專對)의 재주를 지닌 자까지 택하십시오. 그리 하여 저들이 속임수로 하면 우리는 의(義)로 복종시키고, 저들이 탐욕으로 하면 우리는 위엄으로 다스려서, 교화가 외진 바닷가까지 감동시켜 천지를 운행하는 기틀이 있고, 위엄이 일본까지 펼쳐져 호표(虎豹)가 산에 있는 형세를 얻는다면, 여러 계획이 다 거행되어 변방의 방위가 굳건해질 것이니, (그렇게 되면-역자 주) 저들은 반드시 서로 경계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들의 수신使臣이 완급의 형세를 잘 살피는 것을 보니, 쉽게 대적되던 전의 장수와는 다르다. 저들의 사신使臣이 허실의 형세를 잘 분별하는 것을 보니, 속일 수 있었던 전의 사신과는 다르다. 이는 반드시 조정에 책임자가 있어 제대로 사람들을 임용해서이니, 우리가 그만두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재앙을 우리가 받을 것이고, 우리가 삼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27) 타국에 사신 가서 모든 질문에 독자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리고는-역자 주) 감히 약속을 어겨 땅을 함부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신의를 버려 분쟁의 단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숨죽이며 자취를 감춰 자보自保할 수 없을까 불안해 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겨를에 울릉도를 노려 함부로 와서 청하겠습니까. 진실로 이와 같아진 후에야 큰 바다가 안정되고 변방의 근심이 영원히 사라져, 우리 영토 대관령이 모두 그대로 보존되어 백년 간 근심 없이 그 이로움을 후세에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께서 내리신 책문에 이른바 ‘만전의 양책’이란 아마 이런 것인 듯합니다.

상상께서 내리신 책문을 읽어 보니, 자대부子大夫들은 모두 편篇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신이 두 번 세 번 거듭 읽어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신이 들으니, 안을 닦는 것(內修)은 본本이고, 외적을 물리치는 것(外攘)은 말末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라의 형세는 파산破船을 파도에 띄워놓았는데 지탱할 만한 노가 없는 것과 같으니, 내치內治가 닦이지 않은 것이 너무 심합니다. 아! 위로는 하늘이 노하여 재이災異가 자주 보이며, 아래로는 백성들이 원망하여 나라의 근본이 날로 흔들리고 윤기倫紀가 무너져 인류가 거의 금수에 가까운데, 당의黨議는 분열되어 조경이 전쟁터로 변해 심복들이 병이 들었으니, 어떻게 그 시제四體를 보존하겠으며, 뿌리가 이미 썩먹었는데 어떻게 그 가지를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작은 변고가 아닌지라 매우 두려워해야 하거늘, 군신 상하가 모두 편안히 있고 근심하지 않아 안으로는 제대로 분변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강한 이웃나라를 배척하여 멀리 창해滄海 속에 있는 탄환만한 조그만 땅을 다루

고 있으니, 공자가 이른바 “계손季孫의 근심이 전유顛輿에게 있지 않고 담장 안에 있다”²⁸⁾고 한 것에 가깝습니다.

앞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순舜임금이 문턱을 널리 펼친 것을 본받고 주 선왕周宣王이 측신側身²⁹⁾하신 것을 본받아, 엄공인외嚴恭寅畏³⁰⁾하여 날로 그 덕을 새롭게 하시어 그 은택이 널리 베풀어지지 않는 곳이 없게 하신다면, 내수內修가 다한 후에 외우外脩는 자연 없어져 사이四夷가 복종하는 정치를³¹⁾ 이루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며, 화이淮夷가 조공하는 교화를³²⁾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해지는 말에 “땅을 넓히려 힘쓰는 자는 황폐해지고, 덕을 넓히려 애쓰는 자는 강해진다”고 했으니, 아! 전하께서는 힘쓰십시오. 힘쓰십시오. 신은 삼가 답합니다.

28) 《論語》〈季孫〉, “吾恐季孫之憂不在顛輿而在蕭牆之內也”

29) 측신수도側身修道의 준말이다. 제앙을 당했을 때 백성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닦아 나가는 제앙의 자세를 가리키는 말이다(《詩經》〈大雅〉 鸛漢序).

30) 엄숙하고 공경하고 삼가고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주공周公이 은 고종廢高宗의 덕을 칭송한 말이다(《書經》〈無逸〉).

31) 《書經》〈周書〉 旅獒에 나온다.

32) 《詩經》〈邶風〉 淇水에 “고요처럼 신문을 잘 하는 이가 관공에서 오랑캐 포로들을 철저히 조사할 하여 바친다(欲問如皋陶 在泮獻囚)”는 말과 “은혜를 깨달은 오랑캐들이……남방의 좋은 황금을 조공으로 많이 바쳤다(懷彼淮夷……大賂南金)”는 말이 나온다.

6. <책문> 원문

王若曰

鬱陵島迫在東海中 輿地勝覽屬之江原道 雖云我國地 而水路險遠 人烟不通 祖宗朝刷還洲民 遂虛其地矣 近來倭人貪其篠蕩鯉魚之利 假名竹島 指爲厥土 請禁我民越境漁採 屢遣近侍 曉諭竹鬱之虛實境界之有別 而終無聽順之意 頗有生梗之端

子用是虛 廣詢朝議 則或以爲祖宗疆土 不可與人 而一爲彼有 則東界無蔽 候風出沒 情爲難測 莫如擇途邊帥 先自據守 或以爲海外小島 自是空地 而百年隣好 不可相失 因此構鬱 非計之得 莫如任其往來 修勅邊備而已

惟此二說 何者爲得 而抑此外 別有萬全之良策歟 予大夫讀書談道之餘 必講安邊靖國之猷 其各悉著于篇 (膽)

臣對

臣聞保國之道 在於審勢 集事之機 係於得人 能審其勢 則國無不保 苟得其人 則事亡不集 是以漢元之葉珠 近於燧土損威 而中國得以無慮者 以其審勢而處之也 齊威之用田盼 不過守邊一吏 而趙人不敢東漁者 以其得人而任之也 此豈非前事之明驗 而後王之可監者乎

今我主上殿下 念軫東鄙 憂深中朝 謨諸聖心者熟矣 詢于拂士者廣矣 而尙慮

夫實有遺策 事或失宜 親臨大庭 策我多士 發此兩端之間 欲聞萬全之策

臣承命主³³⁾ 臣伏而思之 是謀非臣所能及也 雖然五緡壞敵 莫試賈誼之術 長纓係虜 徒切終軍之願 而今幸至前使有所道丹衷所激 白面何嫌 請以審勢得人之說 終始申告焉

臣伏讀聖策曰 鬱陵島 止 虛其地矣³⁴⁾ 圭復再三 隕越于下

臣竊伏惟環海立國 畫野分界 而迫彼鬱島 亦載版籍 地屬關東 路通日本 漲海連天 人煙不接 則輿自祖宗 視同異域 移其民於邦內 置此地於度外者 豈非勢有所不能也 雖然 或取或舍 時有前後之不同 一得一失 要在處置之如何 苟能審勢而處之 得人而任之 輕重利害 自主其權 鎮服控制 各得其宜 則終無復事之患 而能盡保國之道矣 伏願殿下留心焉

臣伏讀聖策曰 近來倭人 止 萬全之良策歟³⁵⁾ 臣圭復再三 隕越于下

島在絕海 物自今古 草木長焉 魚鼈養焉 厥木巨竹 其焦大鯨 惟彼倭人 惟利是貪 垂涎我物產 生心我土地 假彼竹島之名 眩我鬱陵之實 陰逞嘗試之計 請禁漁採之民 其心巧矣 其言肆矣 而以殿下綏遠之德 行先王待夷之道 不較曲直 明示曉諭 近侍御命 冠蓋微路 而下其虛實 不啻日中之難決 定我境界 未免海外之無憑 黑心不俊 終無聽命之意 壑慾無厭 惟肆貪得之心 頗有不遜之狀 而亦多生梗之端 以至邊鄙繹騷 人心危懼

33) 主命의 오류인 듯하다.

34) “鬱陵島迫在東海中”부터 “祖宗朝刷還洲民 遂虛其地矣”까지를 생략하여 말한 것이다.

35) “近來倭人貪其篠蕩鯉魚之利”부터 “而抑此外 別有萬全之良策歟”까지를 생략하여 말한 것이다.

肆我殿下隱憂於中 歷問于朝 而周謀孔多 漢若爭借朝之王朴之奇策 人無如晦之善斷 直殿下莫適所從而降問於臣等也 如臣膚淺 素昧摠略 乃敢發口 忘論便否 則不亦羞當世之士乎 然而揣摩時事所憂則有之 請就聖問 熟數之於前

其曰 祖宗疆土 不可與人 擇送邊帥 先自據守者 可謂守經持正之論 而臣知其不可用也 何以言之 王者以土地為寶者 以其有人蓄財穀而為國所需也 今鬱島則不然 虛無人畜 辟不耕種 此正古人所謂比石田 豈可等此於有用之內地 而從事於外夷也 今若入送邊帥 以為據守之地 則我軍不習操舟 未諳水路 行有疾疫飄沒之憂 守有浮寄孤懸之患 敵來而無可援之勢 事急而無可歸之路矣 誠用此計 必敗殿下之事矣

其曰 百年隣好不可相失 任其往來 修飭邊備者 可謂審勢權宜之論 而臣知其未盡善也 何以言之 王者以和親為事者 以其各守境界而無相侵奪也 今倭人則不然 不念成約 無故索地 此正古人所謂地有盡而秦之求無已者也 豈慮其隣好之有失而坐受其侵侮也 今若任之往來而只為退保之計 則彼必喜得所欲而益無所忌 小則有恐喝徵索之弊 大則有覬覦吞虛之患 驕敵而招畏人之譏 示弱而失自強之策矣 誠用此計 恐貽大朝之羞矣

嗚呼 邊事之難處如此 而朝議之不一如此 執端用中 何策為得 而臣愚一得而異於是 宋臣蘇洵之言曰 不審天下之勢 而能成天下之務難矣 先儒又曰 天生一世之才 足了一世之事 是故勢有順逆 而審其機而行之 則無不順成 事有難易 而任其才而責之 則不見其難 臣未知殿下能盡二者之道 以為安邊之本乎 勢苟審矣 人苟得矣 今日之事 必不至此

臣於此有可言者矣 嗚呼 審勢之道 其要有三 地勢也時勢也兵勢也 得人之道 其大有三 相臣也帥臣也使臣也 臣請舉此六者之目 以證今日之失

臣謹按兵書曰 不習地勢 為敵所禽 此言地勢不可不審也 而酒者海島險遠 舟輟路窮 而遽欲驅不習之人 試不測之地 是謂審地勢乎 臣又按孟子曰 雖有鉉基 不如待時 此言時勢不可不審也 而酒者饑饉相仍 老弱填壑 而將欲學子遺之氓 拓無用之地 是謂審時勢乎 臣又按孫武曰 知彼知己 百戰不殆 此言兵勢不可不審也 而酒者兵力單弱 恬愒日久 而直欲用不教之民 角非茹茹籬筍³⁶⁾之虜 是謂審兵勢乎 此臣所謂保國之道 在於審勢 而勢之不審也 如此何以保其國也

臣聞司馬作宰相 而北虜有慎勿生事之戒 則相臣不可不得也 而酒者庶謀失宜 夷虜輕朝 則其可謂得相臣乎 臣聞仲淹為邊帥 而西賊有驚破膽之謠 則帥臣不可不得也 而酒者恥甚虓境 而武乏威敵 則其可謂得帥臣乎

臣聞富弼使契丹 而能以大義拒割地之請 則使臣不可不得也 而酒者我使相望 而彼求無已 則其可謂得使臣乎 此臣所謂集事之機 係於得人 而人之不得也 如此何以集其事也

嗚呼 殿下於三者之勢 既不能審處 三者之任 又不得其人 而徒欲拓祖宗不拓之地 制祖宗未制之敵 以若所為 求若所欲 徒無益 後必有災矣 與其區區於入海據島 曷若先審其勢也 與其屑屑於勅邊帥備 曷若先得其人也 然則今日安邊之策 莫急於審勢得人

36) 匪茹의 오자인 듯하다.

吾國得勝... 吾國得勝... 吾國得勝...

運籌... 運籌... 運籌...

知往來... 知往來... 知往來...

不... 不... 不...

者... 者... 者...

者... 者... 者...

伏願殿下... 伏願殿下... 伏願殿下...

伏讀聖策... 伏讀聖策... 伏讀聖策...

伏願殿下... 伏願殿下... 伏願殿下...

37) 원문에는 '巧'로 되어 있는데 오류인 듯하다.

<술도군 결목>(1902)

1. 절목節目이 나오게 된 배경

1882년에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진 이후 1883년에 약 50여 명이 입도했으나 일본인들은 그 이전부터 울릉도에 몰래 들어와 벌목과 어로활동을 하고 있었다. 1880년대 후반이 되자 러시아와 영국인까지 가세하여 울릉도의 벌목을 무단으로 반출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전복과 수산물까지 채취해 가고 있었다. 이에 따라 1888년 이전에는 지방관의 보고사항이 벌목이 주를 이뤘다면 그 후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보고가 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한 울릉도 도장의 대치는 민첩하지 못했고 상부의 보고도 신속하지 못해, 강원감영은 도장의 파출을 건의하기도 했다. 한때 월송포 만호가 울릉도 침사를 겸직하면서 도장의 역할을 대신했지만, 고종이 강원도 관찰사에게 울릉도 검찰을 특별히 당부하고 선견관 윤시명을 검찰관으로 파견하는 일을 계기로 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다.

1895년 8월 울릉도 도장은 도감으로 직함이 바뀌었고, 배계주가 도감에 임명되었다. 1889년에 체결한 <조일통어장정>으로 말미암아 일본 선박의 울릉도 연안 출입이 빈번해지고 선박의 숫자도 크게 늘어나 일본인의 행

